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행 정 절 차 법 시 행 령 일 부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(행정안전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(안)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정책에 직접 참여하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를 반영하고, 정책 전 과정에 국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「행정절차법」이 개정(2019.12.10. 공포, 2020. 6.11.시행)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, 청문 주재자의 제척 대상 부서의 범위,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관련 규정 등을 신설하고, 그 밖의 행정절차 제도운영 상 미비한 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3. 주요내용

가. 공청회 개최 요구 요건(대상처분, 당사자 수) 신설 (안 제13조의3)

- 1) 당사자등이 행정청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법이 개정됨에 따라 공청회 개최 요구 대상이 되는 ‘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’의 구체적 내용, ‘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기간’ 및 ‘공청회 개최 요건이 성립하기 위한 당사자등의 수’를 구체적으로 정함
- 2) ‘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처분’을 ‘국민 다수의 생명,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’, ‘폐기물, 소음, 악취 등 국민의 일상 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’ 및 ‘국민의 권리의무에 변동을 가져오는 특정구역·지구·지역의 지정·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법령에서 당사자등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한 경우’로 구체적으로 명시함

- 3)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는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행정청에 처분 전 또는 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 공청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함
 - 4) 공청회 개최 요건이 되는 당사자들의 수를 ‘30인 이상의 당사자들’으로 정함
- 나. 청문 주재자의 제척·기피·회피 대상 부서의 범위 신설 (안 제15조의2)
- 1) 청문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청문 주재자의 제척·기피·회피 대상에 ‘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에 근무하는 경우’가 추가됨
 - 2) ‘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부서’를 ‘과·담당관’ 또는 ‘과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단위’로 정함.

다. 공청회 주재자 자격요건 신설 (안 제21조제1항)

- 1) 공청회 주재자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함
- 2) 공청회 주재자의 자격요건을 ‘교수·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’, ‘관련 분야 경험이 있는 전직공무원’ 및 ‘그 밖에 관련 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’으로 규정함

라. 행정예고의 대상을 규정한 영 제24조 삭제·관계기관의 의견청취 수정 (안 제24조의2 수정)

- 1) 원칙적으로 행정예고를 실시하도록 하고,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행정예고를 생략할 수 있도록 법 개정
- 2) 이에따라 행정예고의 대상을 예시하고 있는 기존 시행령 제24조 삭제하고 행정예고의 원칙적 실시에 따른 영 제24조의 2 일부 수정

마.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수정·신설

- 1) 국민참여 확대를 위해 운영되고 있는 온·오프라인 정책공론장 설치·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함
- 2) 온·오프라인 정책공론장에 행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와 국민참여플랫폼 정책 제안에 대한 관계기관의 답변·정책화 등의 노력 의무사항을 명시함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행정절차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3조의3(공청회의 개최요건등)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.

1. 국민 다수의 생명,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
2. 폐기물, 소음,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
3. 일정한 지역에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구역·지구·지역의 지정·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개별 법령에서 지역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

② 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등은 행정청에 처분 전(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 그 기한까지)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”이란 “30인 이상의 당사자등”을 말한다.

제15조의2(청문 주재자의 제척·기피·회피)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“부서의 구체적인 범위”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로 하되,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외의 기관의 경우는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 단위로 한다.

제2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교수·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
2.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직 공무원
3.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사람

제24조를 삭제한다.

제24조의2 제1항 “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”을 “본문에 따라”로, 같은 항 “한 때에는”을 “하여 행정예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에 앞서”로 하고, 후단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은 삭제한다.

다만, 당해 정책·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.

제25조의2 제3항 “토론, 투표, 평가”는 “제안, 토론, 투표 및 평가를”로, “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”은 “온·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·운

영할 수 있으며, 정책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온·오프라인 국민 참여플랫폼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,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 현황 또는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방법·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.

⑥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 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
⑦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정책제안이 제5항에 따라 수립된 세부 운영기준의 정책제안 답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 정책제안의 소관 행정청은 정해진 기한 이내에 답변하고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2020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13조의3(공청회의 개최요건등)</u> ① <u>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처분”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. 다만, 행정청이 당해 처분과 관련하여 이미 공청회를 개최한 경우는 제외한다.</u> <u>1. 국민 다수의 생명, 안전 및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</u> <u>2. 폐기물, 소음, 악취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</u> <u>3. 일정한 지역에서 다수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구역·지구·지역의 지정·해제 등의 처분으로서 개별법령에서 지역 주민,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한 경우</u> ② <u>제1항에 따른 처분에 대하여 당사자들은 행정청에 처분 전 (당해 처분에 대하여 행정청이 의견제출 기한을 정한 경우에는</u>

<신 설>

제21조(공청회의 발표자 선정)
<신 설>

그 기한까지)에 공청회의 개최를 요구할 수 있다.

③ 법 제22조제2항제3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당사자등”이란 “30인 이상의 당사자등”을 말한다.

제15조의2(청문 주재자의 제척·기피·회피) 법 제29조제1항제5호에서 “부서의 구체적인 범위”는 해당 처분업무를 처리하는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로 하되,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그 이외의 기관의 경우는 ‘과(담당관을 포함한다)’와 유사한 단위로 운영되는 조직 단위로 한다.

제21조(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) ① 법 제38조의3제1항에서 “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
1. 교수·변호사·공인회계사 등 관련분야의 전문직 종사자
2.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직 공무원

(생략)

제24조(행정예고의 대상) 법 제46

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예고를 하여야 하는 사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. 다만, 다른 법령에서 공고절차를 거쳐 공람·열람·공청회·토론회·설명회 등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 의한다.

1.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하여야 하는 사항 등에 관한 것으로서,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주는 정책·제도 및 계획
2. 환경보전지역 및 문화재보호구역의 지정 등 일정한 지역에서 많은 국민의 이해가 상충되는 정책·제도 및 계획
3. 상수도의 단수 등 국민의 일상생활과 관련이 있어 많은

3. 그 밖의 업무경험을 통하여 공청회 사안과 관련되는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

②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<삭제>

국민에게 불편이나 부담을 주는 정책·제도 및 계획

4. 사회기반시설 등의 건설·설치, 학사제도·전용차로제의 조정·변경 등 널리 국민의 의견수렴이 필요한 정책·제도 및 계획

5. 그 밖에 행정청이 행정예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책·제도 및 계획

제24조의2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

① 행정청이 법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정책·제도 및 계획을 입안한 때에는 당해 정책·제도 및 계획의 내용을 관계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 그 의견을 들어야 한다. <단서 신설>

② (생략)

③ 행정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행정예고를 하여야 한

제24조의2(관계기관의 의견청취)

①----- 본
문에 따라 -----

---- 입안하여 행정예고를 하는
경우에는 이에앞서 -----

----- . 다만, 당해 정책
· 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
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
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
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.

② (현행과 같음)

<삭 제>

다. 다만, 당해 정책·제도 및 계획의 내용이 의견을 듣기에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행정예고를 할 수 있다.

제25조의2(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

①·② (생략)

③ 행정청은 제1항에 따른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 또는 제2항에 따른 기법의 활용을 위하여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정책에 대하여 토론, 투표,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.

④ (생략)

<신설>

<신설>

제25조의2(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참여방법과 협력의 기회 제공)

①·② (현행과 같음)

③ -----

----- 제안, 토론, 투표 및 ----- 온·오프라인 국민참여 플랫폼을 설치·운영할 수 있으며, 정책 과정에 국민참여가 활성화 되도록 온·오프라인 국민참여플랫폼-----
-----.

④ (현행과 같음)

⑤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폼의 이용자 현황 또는 기관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에 필요한 방법·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을 수립할 수 있다.

⑥ 행정청은 제3항에 따른 국민

<신 설>

참여 플랫폼 활성화를 위하여
행·재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다.
⑦ 제3항에 따른 국민참여 플랫
폼의 정책제안이 제5항에 따라
수립된 세부 운영기준의 정책제
안 답변기준을 충족한 경우 그
정책제안의 소관 행정청은 정해
진 기한 이내에 답변하고 정책
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
야 한다.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공공서비스혁신과	
연 락 처	044-205-2412